

우크라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승인
승인 날짜 2025년 _____ 제 _____ 호

기술 규정

대체 자동차 연료에 관한 요구사항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기술 규정은 해당 연료에 적합한 차량의 내연기관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 제공되는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기술 규정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8/2001/EC, 휘발유 및 경유 품질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0/EC와 이사회 개정 지침 93/12/EC, 휘발유, 디젤, 경유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메커니즘 도입과 관련한 2009년 4월 2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0/EC와 개정 지침 98/70/EC, 내수 항해 선박용 연료의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이사회 개정 지침 1999/32/EC와 지침 폐지안 93/12/EC, 그리고 “대체 연료”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2. 이 기술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가솔린 엔진용 대체 자동차 연료 – 부피 기준으로 10% 이상의 생물성 성분을 함유한 자동차 연료(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엔진용 대체 자동차 연료 – 부피 기준으로 지방산의 메틸 그리고/또는 에틸 에스테르를 7% 이상 함유한 자동차 연료(디젤 연료)

3. 이 기술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대체 자동차 연료:

최소 비축량 또는 국가 물자 비축 및 동원 비축의 물적 자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국방군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목적

- 해당 연료 생산자가 자체 생산 및 기술적 요구를 위해 소비하며, 주유소 소매망을 포함한 어떠한 경로로도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대체 자동차 연료

4. 이 기술 규정에서 아래에 언급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생물성 성분 – 다른 연료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

첨가제 – 대체 자동차 연료에 첨가되어 환경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특수한 특성을 부여하거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연료 안정성(층분리, 산화 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

시장 내 연료 유통 – 생산자(수입자, 유통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연료 이동(운송) 또는 운송, 저장, 판매, 소비와 관련된 모든 행위.

품질 증명서 – 실험실 시험을 통해 도출된 대체 자동차 연료의 실제 품질 지표 값에 관한 데이터와 기술 규정에서 정의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연료 배치 – 단일 상표의 연료로, 기술적 요구사항(품질 증명서)을 충족한다는 단일 적합성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양의 연료.

대체 자동차 연료 명칭이란 환경 등급 및 바이오 성분 함유량 기호를 포함하는 대체 자동차 연료의 명칭과 상표를 의미한다.

기술 문서 – 대체 자동차 연료 생산자가 작성한 문서 세트로서 연료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대체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이란 제조사가 승인한 문서로서, 시장성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절차, 저장 요구사항, 연료 배치 출하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을 명확히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기타 용어는 “대체 연료”,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 및 “비식품 제품의 일반 안전”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과 2013년 8월 1일 우크라이나 국무회의 의결 제927호(우크라이나 관보, 2014년 제2호, 35쪽, 2020년 제86호, 2765쪽 및 2022년 제25호, 1360쪽, 제40호, 2188쪽 그리고 제42호, 2285쪽)에 의해 승인된 “자동차 휘발유, 경유, 선박 및 보일러 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그리고 이들 법률의 적용 영역에서 관계를 규율하는 기타 법적 행위에서 부여된 의미로 사용된다.

시장에서의 대체 자동차 연료 공급 요구사항

5.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자동차 연료의 유통 개시 및 시장 공급이 허용된다.

6. 대체 자동차 연료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는 해당 배치의 저장 및 운송 전 단계에서 대체 자동차 연료, 특히 이 기술 규정에서 정의된 연료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대체 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체는 아래에 명시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연료 표시 – 주유소, LPG 충전소 및 LPG 충전 지점의 입구에 설치된 정보 게시판(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은 물론, 연료 공급 장비, 소비자 매대, 계산대 지역의

정보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기술적 요구사항 준수 관련 문서 사본(품질 인증서) 및 적합성 진술서 사본은 주유소, LPG 충전소 및 LPG 충전 지점의 운영자 근처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8. 시장에 대체 자동차 연료를 공급할 때, 유통업자는 구매자 및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료의 품질 증명서 및 적합성 진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유통을 위해 발송되거나 시장에 공급되는 대체 자동차 연료의 각 배치에는 품질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품질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행일 및 문서 번호

대체 자동차 연료의 명칭

생물성 성분 함유량(백분율)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대체 연료 제조일

시료 채취일 및 시험일

대체 연료 배치가 기술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품질 지표의 한계값 및 실제값

국가 표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참조

배치(탱크) 번호

첨가제의 종류 및 양에 관한 데이터

기술관리부서장 또는 해당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험실장, 또는 위임 대표자의 서명

대체 연료의 최대 유통기한.

10.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대체 자동차 연료의 지정은 이 기술 규정 부록 1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가솔린 엔진용 대체 자동차 연료는 기술 규정 부록 2에 정의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디젤 엔진용 대체 자동차 연료는 기술 규정 부록 3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해 안전 화학 제품 인증서를 보유한 첨가제를 물리적·화학적 특성, 성능 및 기타 특성 개선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메탄올은 최대 2000mg/kg의 양으로 부동액(동결 방지) 첨가제로 첨가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13. 대체 자동차 연료 적합성평가는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4.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이 기술 규정 부록 4의 양식에 따라 대체 연료 적합성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대체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는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는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적합성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된 대체 자동차 연료를 유통시키기 전, 대체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에 변경이 이루어진 후.

16. 기술 문서 작성 없이 배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대체 자동차 연료의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유통업자는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적합성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된 대체 자동차 연료의 유통 전, 대체 자동차 연료의 최대 저장 기간 만료 후

대체 연료 배치 수입 시.

17. 대체 자동차 연료의 적합성 진술서는 이 기술 규정 부록 4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8. 대량 생산된 대체 자동차 연료의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는 해당 연료가 기술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 문서를 설계해야 한다.

기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자가 승인한 대체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

대체 연료에 첨가되는 경우 첨가제, 염료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

대체 자동차 연료 제조의 근거가 되는 규제 문서 – 국가 표준, 기술 사양, GOST, DSTU 또는 대체 자동차 연료 제조의 근거가 되는 기타 규제 문서.

19. 대체 자동차 연료가 이 기술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이 기술 규정에 정의된 지표에 기반하여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0.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가 기술 규정에 따라 정의한 지표에 기반한 대체 자동차 연료의 평가는 제조자의 공인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가 선택한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이하 “지정 기관”이라 함)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1.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이 기술 규정에서 정의한 지표에 기반한 대체

자동차 연료의 평가는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가 선택한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2. 제조자의 공인된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

22.1. 제조자의 공인된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은 대체 연료가 기술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료 채취 및 시험을 수행한다.

22.2. 대체 자동차 연료의 시료는 이 기술 규정 부록 2 및 3에 정의된 해당 유형의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대체 자동차 연료의 제조 근거가 되는 규제 문서에 명시된 지표에 따라, 기술 규정 준수 검증과 병행하여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2.3.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자의 공인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 직원은 각 시험 결과 및 개별 지표 계산 결과를 작업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작업 기록부는 서류 또는 전자 매체로 보관해야 한다. 제조자의 공인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 책임자는 서류 작업 기록부에 번호를 부여하고 제본하며 봉인해야 한다. 전자 작업 기록부는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2.4. 시험 결과가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작업 기록부의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제조자의 공인 내부 적합성평가 기관 책임자는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품질 문서(품질 증명서)를 작성한다. 품질 문서(품질 증명서)에는 대체 연료가 이 기술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지정 기관이 참여하는 시험.

23.1.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대체 자동차 연료가 이 기술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신청서에는 아래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 규정 부록 1에 따른 대체 자동차 연료 지정, UKTZED 코드

신청 기관의 명칭 및 주소, EDRPOU 코드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EDRPOU 코드

첨가제 및 연료의 명칭 및 수량 - 대체 자동차 연료에 첨가된 경우.

23.3. 신청서와 함께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대체 연료에 첨가된 경우 첨가제 및 연료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를 제출해야 한다.

23.4. 대체 자동차 연료의 시료는 이 기술 규정 부록 2 및 3에 정의된 해당 유형의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23.5. 시험 결과가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은 신청자에게 대체 연료의 품질 문서(품질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4.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는 마지막 연료 배치 생산 후 5년간 기술 문서(품질 문서(품질 증명서) 및 적합성 진술서 제외)를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 문서(품질 증명서) 및 적합성 진술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5. 제조자 또는 위임 대표자는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해당 국가시장감독 당국에 기술 문서를 검사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6. 대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국가시장감독 및 통제는 “비식품 제품에 대한 시장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